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543

JCCT 2023-5-6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Awareness of Managers and Workers in Construction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이동선*, 오태근**

Dongsun Lee*, Taekeun Oh**

요약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지만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20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사망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자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식

Abstract Korea has achieved great economic growth, but the high rate of accidents in the industry still threatens the safety of workers and causes a lot of property loss. In order to lower the accident r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fully revised in April 2020 and safety management was strengthened, but the number of deaths rather increas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mplemente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January 2022, but the effect has not been confirmed. So,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how the safety awareness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was affected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Key words : Safety Managemen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fety Awareness

1. 서론

한국은 GDP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행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과 인명피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1].

건설업은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며 현행 산업안전제

도는 단일 사업주, 고정된 사업장, 근속이 전제된 정규직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지만, 건설현장은 다수 공중의 독립적인 생산자, 일시적 사업장,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특징 때문에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다[2].

국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단위 사업장 규모가 크고 고층화·대형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공법과 건물의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건설업 산업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일

Received: May 26, 2023 / Revised: June 15, 2023

Accepted: July 3, 2023

**Corresponding Author: thoh@inu.ac.kr

Dep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 Korea

재해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건설현장 안전시설물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물적 원인과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빈약 등과 같은 인적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계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장비·기계를 다루는 것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3].

정부와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지만, 건설업의 사망재해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만으로 산업현장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경영자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4].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기업경영자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건설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투철하게 진행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건설재해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게끔 인도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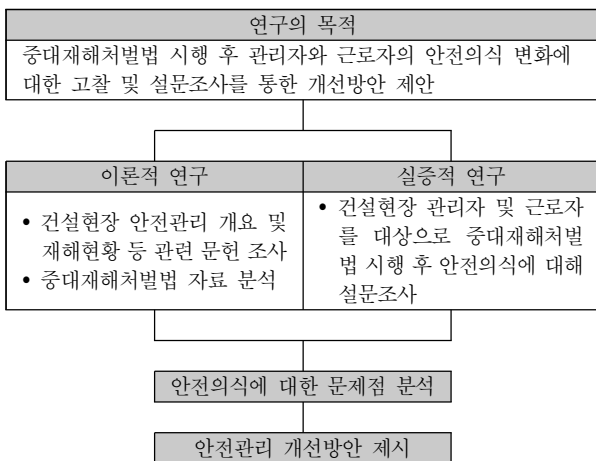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개요
Figure 1. Structure of Research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관련 자료조사와 건설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 안전권리 및 책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곳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30명씩 총 90명, 도급순위 30위권 내 현역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설문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관리자 설문지와 근로자 설문지 모두 (1) 기본정보, (2) 안전의식, (3)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4) 안전권리 및 책임, (5) 현장 실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항목
Table 1. Questionnaire components

| 설문지 항목 대분류 | 설문지 항목 상세분류 |
|----------------|-------------------------|
| (1) 기본정보 | 응답자 연령, 경력, 고용형태 |
| (2) 안전의식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안전의식 |
| |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 |
| (3)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 안전시설물 훼손에 대한 안전의식 |
| |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및 교육 여부 |
| |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
| (4) 안전권리 및 책임 | 중처벌 이후 책임 증가 여부 |
| (5) 현장 실태 조사 | 작업거부/중지 권리에 대한 생각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교육 시간 증가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무량 증가 |

2. 설문결과 및 분석

2.1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

건설현장 경력에 대한 응답은 표 2와 같다. 근로자는 61.1%로 과반수 이상, 관리자는 46.7%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이라고 조사되었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한 건설근로자가 많은 것은 건설업에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건설업에 새로운 인력 충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건설업 근로자들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 설문 응답자 현장 경력
 Table 2. Experience of survey respondents

| 구분 | 근로자 | | 관리자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1년 미만 | 1 | 1.1 | 0 | 0 |
| 1년~3년 | 11 | 12.2 | 1 | 3.3 |
| 3년~5년 | 8 | 8.9 | 8 | 26.7 |
| 5년~10년 | 15 | 16.7 | 7 | 23.3 |
| 10년 이상 | 55 | 61.1 | 14 | 46.7 |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근로자 98.9%가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조사되었으며 표 3과 같다. 건설업은 생산현장이 고정적이지 않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건설현장 근로자를 공사 기간 일용직 형태로 주변 지역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처럼 4대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며,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근태관리가 어려워진다.

표 3. 설문 응답자 고용형태
 Table 3. Employment Type of Survey Respondents

| 구분 | 근로자 | | 관리자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일용직 | 75 | 83.3 | 0 | 0 |
| 계약직 | 14 | 15.6 | 13 | 43.3 |
| 정규직 | 1 | 1.1 | 17 | 56.7 |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안전의식 변화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근로자의 응답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소폭향상되었으나, 아직도 13%의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5와 같이 착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로는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작업하는데 불편함'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사는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필수 착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의 응답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모두 '매우 그렇다' 100.0%로 나타났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관

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투철한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현장 안전문화를 구축하는데 솔선수범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안전보호구 착용 유무
 Table 4. Whether or not to wear safety equipment

| 구분 | 중처법 시행 전 | | 중처법 시행 후 | |
|--------|----------|-------|----------|-------|
| | 근로자 | 관리자 | 근로자 | 관리자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매우 그렇다 | 30.0 | 100 | 32.2 | 100 |
| 그렇다 | 55.6 | 0 | 54.4 | 0 |
| 보통 | 11.1 | 0 | 12.2 | 0 |
| 아니다 | 3.3 | 0 | 11.1 | 0 |
| 전혀 아니다 | 0 | 0 | 0 | 0 |

표 5.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Table 5. Reasons for not wearing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
| | 근로자 | 관리자 | 근로자 | 관리자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작업 불편성 | 64.4 | 86.7 | 24.4 | 10.0 |
| 불필요성 | 4.4 | 0 | 3.3 | 6.7 |
| 깜빡함 | 18.8 | 0 | 27.7 | 16.7 |
| 작업속도가 느려짐 | 4.4 | 3.3 | 28.8 | 56.7 |
| 미착용시 벌칙이 약함 | 7.8 | 10.0 | 15.6 | 10.0 |

안전교육은 형식적이며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6과 같다.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66.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8.9%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조사되었으며, 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56.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90%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인식변화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관리자의 인식변화는 대폭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 안전교육시간은

표 6. 안전교육의 효과성
 Table 6.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 구분 | 중처법 시행 전 | | 중처법 시행 후 | |
|--------|----------|-------|----------|-------|
| | 근로자1 | 관리자1 | 근로자2 | 관리자2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매우 그렇다 | 0 | 0 | 0 | 0 |
| 그렇다 | 8.9 | 10 | 10 | 6.6 |
| 보통 | 24.4 | 33.3 | 21.1 | 3.3 |
| 아니다 | 55.6 | 53.3 | 56.7 | 66.7 |
| 전혀 아니다 | 11.1 | 3.3 | 12.2 | 23.3 |

증가하였으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낌에 대한 대답은 표 7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90% 이상의 근로자들은 모두 안전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위험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근로자들도 안전시설물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낌
Table 7. Feel the risk when safety facilities are damaged

| 구분 | 중처법 시행 전 | | 중처법 시행 후 | |
|--------|----------|-------|----------|-------|
| | 근로자1 | 관리자1 | 근로자2 | 관리자2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매우 그렇다 | 44.1 | 30.0 | 43.3 | 76.7 |
| 그렇다 | 48.9 | 63.3 | 52.2 | 23.3 |
| 보통 | 8.9 | 6.7 | 4.4 | 0 |
| 아니다 | 1.1 | 0 | 0 | 0 |
| 전혀 아니다 | 0 | 0 | 0 | 0 |

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매우 그렇다’는 30.0%, ‘그렇다’는 19명 63.3%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매우 그렇다’는 76.7%, ‘그렇다’는 23.3%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자への 형사책임 및 구조적 형사책임을 부과하였으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기업 측면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표 8.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 정도
Table 8. Awar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구분 | 근로자 | | 관리자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매우 그렇다 | 5 | 5.6 | 9 | 30.0 |
| 그렇다 | 40 | 44.4 | 18 | 60.0 |
| 보통 | 29 | 32.2 | 3 | 10.0 |
| 아니다 | 12 | 13.3 | 0 | 0 |
| 전혀 아니다 | 4 | 4.4 | 0 | 0 |

중대재해처벌법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은 표 8과 같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알고 있지만 관리자와 비교하여 인지가 부족하며 표 9와 같이 교육 또한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근로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9.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 여부
Table 9. Education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구분 | 근로자 | | 관리자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매우 그렇다 | 5 | 6.7 | 8 | 26.7 |
| 그렇다 | 45 | 50.0 | 22 | 73.3 |
| 보통 | 18 | 20.0 | 0 | 0 |
| 아니다 | 18 | 20.0 | 0 | 0 |
| 전혀 아니다 | 3 | 3.3 | 0 | 0 |

안전관리를 위해 개선점에 대한 응답은 표 10, 표 11와 같다. 근로자의 1순위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밝혔고 2순위는 ‘근로자에게도 책임과 권한 부여’로 조사되고 관리자의 1순위는 ‘공사기간 증가’로 나타났고 2순위는 ‘근로자에게도 책임과 권한 부여’로 조사되었다.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과 ‘근로자에게도 책임과 권한 부여’ 모두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높은 순위에 선택되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중심으로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표 10. 안전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근로자)
Table 10. Priority for safety management (workers)

| 구분 | 근로자 | |
|--------------------|--------|--------|
| | 1순위(%) | 2순위(%) |
|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56.7 | 23.3 |
| 안전관계자 법적권한 강화 | 11.1 | 17.8 |
| 제도적 대안 변화 | 7.8 | 22.2 |
| 근로자에게 권한 부여 | 10.0 | 23.3 |
| 공사기간 증가 | 14.4 | 13.3 |

표 11. 안전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관리자)
Table 11. Priority for safety management (manager)

| 구분 | 관리자 | |
|--------------------|--------|--------|
| | 1순위(%) | 2순위(%) |
|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16.6 | 40.0 |
| 안전관계자 법적권한 강화 | 6.6 | 6.6 |
| 제도적 대안 변화 | 6.6 | 6.6 |
| 근로자에게 권한 부여 | 33.3 | 23.3 |
| 공사기간 증가 | 36.7 | 23.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2과

같다.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책임 의식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적 책임
 Table 12. Legal responsibility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구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그렇다 | 16 | 53.3 |
| 그렇다 | 13 | 43.3 |
| 보통 | 1 | 3.3 |
| 아니다 | 0 | 0 |
| 전혀 아니다 | 0 | 0 |

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작업을 거부 또는 중지할 권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은 표 13과 같다.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거부에 대한 권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근로자의 안전권리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리자 비중이 73.3%에서 93.3%로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관리자 본인의 법적 책임이 많이 늘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응하는 것이다.

표 13.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작업을 거부·중지할 권리
 Table 13. Right to refuse/stop work if safety measures are insufficient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 |
|--------|--------------|-------|--------------|-------|
| | 근로자 | 관리자 | 근로자 | 관리자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매우 그렇다 | 31.1 | 10 | 35.6 | 63.3 |
| 그렇다 | 43.3 | 63.3 | 46.7 | 30.0 |
| 보통 | 17.8 | 20.0 | 14.3 | 3.3 |
| 아니다 | 7.8 | 6.7 | 3.3 | 3.3 |
| 전혀 아니다 | 0 | 0 | 0 | 0 |

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실태 분석

표 14와 같이 근로자와 관리자의 과반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교육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 및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표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적 안전교육 시간 증가 여부
 Table 14. Increased safety training hours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구분 | 근로자 | | 관리자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매우 그렇다 | 2 | 2.2 | 0 | 0 |
| 그렇다 | 49 | 54.4 | 19 | 63.3 |
| 보통 | 36 | 40.0 | 9 | 30.0 |
| 아니다 | 2 | 2.2 | 2 | 6.7 |
| 전혀 아니다 | 1 | 1.1 | 0 | 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관리자 업무 증가에 대한 응답은 표 15와 같다. 관리자 96.7%가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부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의 안전업무도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무량 증가 여부
 Table 15. Increased workload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구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그렇다 | 16 | 53.3 |
| 그렇다 | 13 | 43.3 |
| 보통 | 1 | 3.3 |
| 아니다 | 0 | 0 |
| 전혀 아니다 | 0 | 0 |

III. 결 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한 관련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시행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안전관리에 긍정적인 생각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근로자들의 변화는 미비한 반면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대폭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부담감도 커져 있었다. 이에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줄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바로 안전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이다. 현재 건설현장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령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근로자가 체력적 소모가 많고 옥외작업이 대부분이 건설작업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통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건설현장의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불안전한 상태는 건설현장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작업과정에서 경험했던 위험한 행동과 상황을 기반으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관리자들과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관리자들과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안전에 대한 경감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자들과 법적 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현장 안전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4] H. B. Jeon, "The Full Amend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Its Subsequent Tasks",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vol.36, pp.57-84, 2018

[5] H. K. Kim, "Corporate Manslaughter in Korea: Drawing some legal lessons from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8 no.4 , pp.893-902, 2018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21R1I1A2050912).

References

[1] S. S. Go, D. H. Song, Y. C. Yun, "A Study on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Safety Inspections cost in Apartment hous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Management, vol. 15, no. 2, pp. 62-70, 2014.

[2] Y. J. Yu, k. Y. Son, J. M. Kim, "A Basic Study on the Qualitative Risk Assessment Model for Building Construction Sites Based on Claim Payou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 16, no. 6, pp. 487 - 495, 2016.

[3] Z. Zhang, S. H. An, "Improving the Safety Awareness of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 14, no. 5, pp. 451 - 457, Oct. 2014.